

< 변경대비표 >

1. 변경대상 투자신탁(총 5개) 및 변경 문건:

펀드명	구분	신탁계약서	설명서	간이설명서
유로증권자 A(주식)	자펀드	○	○	○
유로밸런스드증권자 A (채권혼합)	자펀드	○	○	○
이머징위너스밸런스드자 A(주식혼합)	자펀드	○	○	○
유로증권모(주식)	모펀드	○		
이머징위너스밸런스드모(주식혼합)	모펀드	○		
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: 2013년 6월 25일

3. 주요 변경사항:

[1] 신탁계약서

-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(2012.6.29 시행)사항등 반영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44 조 - 모펀드①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	3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제 49 조 - 모펀드⑥ 제 50 조 - 자펀드⑦ (공시 및 보고서 등)	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	---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---
부칙	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[2] 증권신고서(투자설명서)

-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(2012.6.29 시행)사항 반영
- 운용전문인력공시관련변경[부책임용인력 병기]등을 포함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(2012.8.1.시행)사항 반영
- 동법시행령 제 130 조 제 2 항에 따른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
- 해외계좌 신고제도 (FATCA)하의 미국세금 원천징수관련 위험 문구 추가 및 기타 단순자구수정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. 운용전문인력	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(2012.8.1.시행)에 따른 <u>운용전문인력공시기준 변경[부책임용인력 병기(개시 8/1)]</u> <u>신규 부책임용인력</u> • <u>유로밸런스드증권자/유로자 A/유로증권모 - 장정주</u> • <u>이머징위너스밸런스드증권자 A/증권모 - 김영신</u>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 관리 및 수익구조		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 해외계좌 신고제도 (FATCA)하의 미국세금 원천징수	항목신설	미국 재무부와 정보보고요구 및 원천징수요구(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)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미국에서 얻은 소득 및 이 투자신탁에게 이자·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의 매각 수익 각각의 30%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미국세청 또는 재무부는 아직 협정 양식(Form)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. 미국세청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2017년 1월 1일 이후 위 규정의 운영은 현저히 확대될 수도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잠재적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규정 및 제공·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위 규정 및 정보 보고·공개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,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. 매입, 환매, 전환기준 가. 매입 (4) 미국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제한	항목신설	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40년 미국 투자회사법(이후 개정본 포함)("미투자회사법")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고, 등록되지 않을 예정입니다.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미국 증권법(이후 개정본 포함)("미증권법") 또는 미국의 주법에 의한 증권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고, 등록되지 않을 예정입니다. 그러한 증권은 미증권법, 해당주의 주법 및 기타 증권법률에 의해서만 모집되거나 매각되거나 달리 이전될 수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이 직간접적인 실질 소유자인 비미국인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. ..... 이하생략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	<u>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을 개정(2012.6.29 시행)사항 반영</u>

### [3] 간이 투자설명서

- 운용전문인력공시관련변경[부책임용인력 병기]등을 포함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(2012.8.1.시행)사항 반영
- 동법시행령 제 130 조 제 2 항에 따른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
- 해외계좌 신고제도 (FATCA)하의 미국세금 원천징수관련 위험 문구 추가 및 기타 단순자구수정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3. 주요 투자위험	항목신설	미국 재무부와 정보보고요구 및 원천징수요구(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)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미국에서 얻은 소득 및 이 투자신탁에게 이자·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의 매각 수익 각각의 30%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미국세청 또는 재무부는 아직 협정 양식(Form)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. 미국세청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2017년 1월 1일 이후 위 규정의 운영은 현저히 확대될 수도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잠재적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규정 및 제공·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위 규정 및 정보 보고·공개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,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<p>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</p> <p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p> <p>6. 투자실적 추이</p> <p>II 매입·환매 관련 정보</p> <p>1. 보수 및 수수료</p> <p>(1)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 <p>(2)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투자기간별 보수 비용 예시표</p> <p>IV. 요약 재무정보</p>	<p>신설</p>	<p>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</p> <p><u>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(2012.8.1.시행)에 따른 운용전문인력공시기준 변경[부책임용운인력 병기(개시 8/1)]</u></p> <p><u>신규 부책임용운인력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유로밸런스드증권자/유로자 A/유로증권모 - 장정주</u></li> <li>• <u>이머징위너스밸런스드증권자 A/증권모 - 김영신</u></li> </ul> <p>※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이 직간접적인 실질 소유자인 비미국인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. 상세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/p>
<p>II 매입·환매 관련 정보</p> <p>2. 과세</p> <p>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</p>	<p>(4 천만원)</p>	<p>일부 문구 수정(종합과세기준금액)</p>